

(건축)마케팅2015-10990

(032)748-2114

2015. 10. 19.

수 신 : 대한체육회

제 목 : 대전 "관저 더샵"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의 건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4지구 30블록에 들어서는 "관저 더샵" 아파트 총 954세대 신규분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2항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자 배정을 요청하오니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개요

-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4지구 30블록
- 세대수 : 총954세대(일반특별공급 95세대)
- 견본주택 오픈일 : 2015년 10월 30일(예정)
- 특별공급 신청일 : 2015년 11월 03일(예정)
- ※ 상기 세대수 및 일정은 예정사항이므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업무협조 요청사항

- 특별공급 대상자 통보일 : 2015년 11월 02일(특별공급 접수 1일전)
- 대상자 배정 회신 담당자 : 문승윤 (010-8803-2525, seungyun.moon@daum.net)

※ 첨부 : 대전 관저더샵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1부. 끝.

주 식 회 사 포 스 코 건 설
대 표 이 사 사 장 황 태 현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4지구 30블록
- 공급규모 및 내역 : 총 954 세대(일반특별공급 95 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 조 제 2 항 : 전용면적 85 m²이하 주택건설량의 10% 범위내)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 조제 2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 대상자	청약통장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일반군위안부 피해자, 장기복무 체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남북피해자, 박사학위 취득 영구 귀국자, 우수선수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아래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

-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치금에 가입하여 6 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하고자 하는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 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 m²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치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 개월이 된 자 중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 납입금(또는 예치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 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 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다자녀 / 노부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 (특별공급은 한 차례 한정하여 1 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 조제 1 항 제 3 호, 제 4 호, 제 4 호의 2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대상세대 (단위: m²/ 세대)

구분(전용면적)	59.9770	72.9230	84.8820	계
세대수	22	20	53	95

※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또는 해당기관의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 및 계약불가]